[여수 더 로제 아델리움 해양공원]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관람 및 사이버 견본주택 동시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61-663-6700)을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7. 0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8.)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 6개월 이상(2022.01.08.)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긴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제한(6개월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다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ys-roseadelium.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 10% 납부 후 전매 가능하며 전매 가능 일자는 사업 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2년 7월 18일(월)	2022년 7월 19일(화)	2022년 7월 20일(수)	2022년 7월 26일(화)	2022년 7월 27일(수) ~ 8월 7일(일)	2022년 8월 8일(월) ~ 8월 1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6:00)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 일반인 입장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앱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여수시 허가민원과 - 47431(2022.07.0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232번지 외 7필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2개동 총 184세대 중 일반분양 184세대
[특별공급 95세대(일반[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18세대, 신혼부부 36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2000317	01	68.4051A	68A	68.4051	26.2678	94.6729	32.5739	127.2468	13.0587	51	5	5	10	1	5	26	25	2
		02	68.6607B	68B	68.6607	26.6195	95.2802	32.6956	127.9758	13.1075	26	3	2	6	0	2	13	13	1
		03	68.0970C	68C	68.0970	26.4208	94.5178	32.4271	126.9449	12.9999	26	3	2	5	0	3	13	13	1
		04	80.6409A	80A	80.6409	31.2856	111.9265	38.4005	150.3270	15.3946	27	3	3	5	2	2	15	12	1
		05	80.6480B	80B	80.6480	30.1686	110.8166	38.4038	149.2204	15.3959	27	2	3	5	1	3	14	13	1
		06	80.6588C	80C	80.6588	30.6191	111.2779	38.4090	149.6869	15.3980	27	2	3	5	1	3	14	13	1
	합 계										184	18	18	36	5	18	95	89	7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7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89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101동 301호 · 101동 302호 · 101동 303호 · 101동 404호 / 102동 401호 · 101동 302호 · 101동 303호)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동별(라인별)	층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30%)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계약 후 1개월)	2022년 11월30일	2023년 05월30일	2023년 11월30일	2024년 05월30일	2024년 09월30일	2024년 12월30일	
68A	101동(4호)	4F	1	64,233,435	300,716,565	364,950,000	10,000,000	2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109,485,000
		5~9F	5	64,233,435	306,716,565	370,950,000	10,000,000	2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111,285,000
		10~15F	6	64,233,435	312,716,565	376,950,000	10,000,000	2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113,085,000
		16~19F	4	64,233,435	318,716,565	382,950,000	10,000,000	2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114,885,000
		20~24F	5	64,233,435	324,716,565	388,950,000	10,000,000	2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116,685,000
		25~28F	4	64,233,435	330,716,565	394,950,000	10,000,000	2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118,485,000
		최상층	1	64,233,435	382,616,565	446,850,000	10,000,000	3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134,055,000
68A	102동(1호)	4F	1	64,233,435	305,716,565	369,950,000	10,000,000	26,995,000	36,995,000	36,995,000	36,995,000	36,995,000	36,995,000	36,995,000	110,985,000
		5~9F	5	64,233,435	311,716,565	375,950,000	10,000,000	27,595,000	37,595,000	37,595,000	37,595,000	37,595,000	37,595,000	37,595,000	112,785,000
		10~15F	6	64,233,435	317,716,565	381,950,000	10,000,000	28,195,000	38,195,000	38,195,000	38,195,000	38,195,000	38,195,000	38,195,000	114,585,000
		16~19F	4	64,233,435	323,716,565	387,950,000	10,000,000	28,795,000	38,795,000	38,795,000	38,795,000	38,795,000	38,795,000	38,795,000	116,385,000
		20~24F	5	64,233,435	329,716,565	393,950,000	10,000,000	29,395,000	39,395,000	39,395,000	39,395,000	39,395,000	39,395,000	39,395,000	118,185,000
		25~27F	3	64,233,435	335,716,565	399,950,000	10,000,000	29,995,000	39,995,000	39,995,000	39,995,000	39,995,000	39,995,000	39,995,000	119,985,000
		최상층	1	64,233,435	383,166,565	447,400,000	10,000,000	3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44,740,000	134,220,000
68B	102동(2호)	3~4F	2	64,473,474	300,476,526	364,950,000	10,000,000	2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109,485,000
		5~9F	5	64,473,474	306,476,526	370,950,000	10,000,000	2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111,285,000
		10~15F	6	64,473,474	312,476,526	376,950,000	10,000,000	2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113,085,000
		16~19F	4	64,473,474	318,476,526	382,950,000	10,000,000	2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114,885,000
		20~24F	5	64,473,474	324,476,526	388,950,000	10,000,000	2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116,685,000
		25~27F	3	64,473,474	330,476,526	394,950,000	10,000,000	2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118,485,000
		최상층	1	64,473,474	382,376,526	446,850,000	10,000,000	3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134,055,000
68C	102동(3호)	3~4F	2	63,944,209	301,005,791	364,950,000	10,000,000	2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36,495,000	109,485,000
		5~9F	5	63,944,209	307,005,791	370,950,000	10,000,000	2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37,095,000	111,285,000
		10~15F	6	63,944,209	313,005,791	376,950,000	10,000,000	2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37,695,000	113,085,000
		16~19F	4	63,944,209	319,005,791	382,950,000	10,000,000	2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38,295,000	114,885,000
		20~24F	5	63,944,209	325,005,791	388,950,000	10,000,000	2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38,895,000	116,685,000
		25~27F	3	63,944,209	331,005,791	394,950,000	10,000,000	2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39,495,000	118,485,000
		최상층	1	63,944,209	382,905,791	446,850,000	10,000,000	3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44,685,000	134,055,000
80A	101동(1호)	3~4F	2	75,723,314	358,776,686	434,500,000	10,000,000	3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130,350,000
		5~9F	5	75,723,314	365,776,686	441,500,000	10,000,000	3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132,450,000
		10~15F	6	75,723,314	372,776,686	448,500,000	10,000,000	3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134,550,000
		16~19F	4	75,723,314	379,776,686	455,500,000	10,000,000	3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136,650,000
		20~24F	5	75,723,314	386,776,686	462,500,000	10,000,000	3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138,750,000
		25~28F	4	75,723,314	393,776,686	469,500,000	10,000,000	3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140,850,000
		최상층	1	75,723,314	453,776,686	529,500,000	10,000,000	4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158,850,000
80B	101동(2호)	3~4F	2	75,729,709	363,770,291	439,500,000	10,000,000	3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5~9F	5	75,729,709	370,770,291	446,500,000	10,000,000	3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133,950,000
		10~15F	6	75,729,709	377,770,291	453,500,000	10,000,000	3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136,050,000
		16~19F	4	75,729,709	384,770,291	460,500,000	10,000,000	3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46,050,000	138,150,000
		20~24F	5	75,729,709	391,770,291	467,500,000	10,000,000	3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140,250,000
		25~28F	4	75,729,709	398,770,291	474,500,000	10,000,000	3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142,350,000
		최상층	1	75,729,709	454,770,291	530,500,000	10,000,000	4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159,150,000
80C	101동(3호)	3~4F	2	75,740,038	358,759,962	434,500,000	10,000,000	3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43,450,000	130,350,000
		5~9F	5	75,740,038	365,759,962	441,500,000	10,000,000	3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132,450,000
		10~15F	6	75,740,038	372,759,962	448,500,000	10,000,000	3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44,850,000	134,550,000
		16~19F	4	75,740,038	379,759,962	455,500,000	10,000,000	3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136,650,000
		20~24F	5	75,740,038	386,759,962	462,500,000	10,000,000	3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138,750,000
		25~28F	4	75,740,038	393,759,962	469,500,000	10,000,000	3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140,850,000
		최상층	1	75,740,038	453,759,962	529,500,000	10,000,000	4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52,950,000	158,85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0A	80B	80C	68A	68B	68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3
	장애인	1		1	1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3	3	5	2	2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5	5	5	10	6	5	3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1	1	0	0	5
생애최초 특별공급		2	3	3	5	2	3	18
합 계		15	14	14	26	13	13	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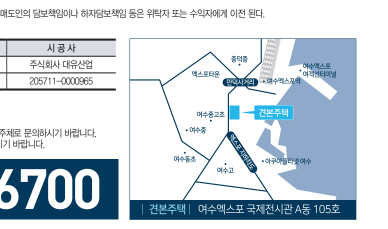

문의 061) 663-6700